

의안번호	제 413 호
의 결 연 월 일	2009 년 9 월 일 (제 283 회)

**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09 년 9 월 3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#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
-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변경 :  
지방자치법 제133조 ⇒ 지방자치법 제142조(안 제1조)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: 2019.12.31까지(안 제1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또는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나”로,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통합기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여유자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여유자금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도 금고”라 함은”을 ““도 금고”란”으로,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기금운용관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 도지사”를 “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분임통합기금운용관”을 “통합기금운용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”를 “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”로, “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”를 “위원회 위원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조제1항과 제2항,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제1항과 제2항, 제13조제1항과 제2항,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5조제1항과 제2항,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통합기금”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<u>당해연도의</u>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도 금고”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도가</u>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함은 <u>도에서</u>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4조(용도)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<u>범위내에서</u>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생략)</li> <li>6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</li> </ol> <p>제5조(운용·관리)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</p>	<p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<u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</u>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<u>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</u>”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<u>해당연도의</u>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도 금고”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4. “기금운용관”이란 <u>도에서</u>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4조(용도)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<u>범위에서</u>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그 밖에</u>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</li> </ol> <p>제5조(운용·관리)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</p>

<p>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분임통합기금운용관</u> : 예산담당관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 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율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통합기금관리관</u>이 되며, 부위원장은 <u>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</u>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중에서</u> 도지사가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/ol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</p>	<p>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통합기금운용관</u> : 예산담당관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율)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통합기금관리관</u>이 되며, 부위원장은 <u>위원회 위원중에서</u>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도본청 각 기금운용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중에서</u> 도지사가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</p>
--	--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 
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
심의 의결한다.

1. ~ 5. (생략)
6.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
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 
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
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 
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당연직 위원<sup>의</sup>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 
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 
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 
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 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 
수 있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  
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 
다.

제15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예탁금은 기  
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
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  
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 
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  
고자 하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 
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 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 
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  
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 
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
심의 의결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  
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 
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 
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 
대행한다.

제1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
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 
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<sup>의</sup>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 
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 
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 
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 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 
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  
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 
다.

제15조(예탁금의 기한전 상환) ① 예탁금은  
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 
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  
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  
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  
는 15일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  
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 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 
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  
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

<p>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<u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9조(현행 제18조와 같음)</u></p>
---	--

## 관련법령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####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##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### 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